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 28

주식회사 컬러소프트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8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1. 일반현황 (20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주식회사 컬러소프트
대 표 자	김기환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	미디어콘텐츠 제공 및 공유서비스 / 약 2,000명
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1억 8천만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대표이사 김기환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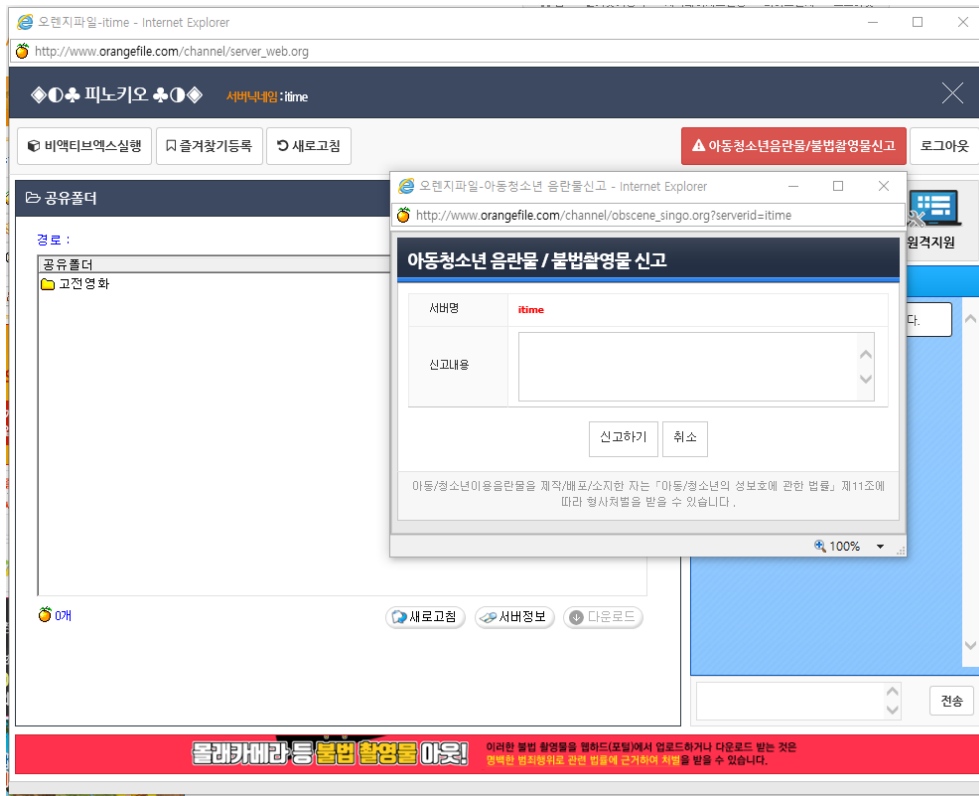
2.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특징기반 시스템 적용 (2015년 도입 ~ 현재)

- (주)버킷스튜디오 의 Smart Filter 시스템 적용 (DNA 필터링)
- HASH 값 등록 및 차단시스템 구축 (MD5 기반 자체시스템)
- 방통위 HASH 시스템 연동

2.2 불법촬영물 등 신고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 (2015년 ~ 현재)

- 신고센터 연락처 : 031-202-5871
- 홈페이지 내 저작권 보호센터 코너 운영
- 저작권 보호센터 (http://www.orangefile.com/copyright/cprt_05.org)

<게시물 등록정보 내 신고하기 기능 제공>



2.3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 (2015년 ~ 현재)

<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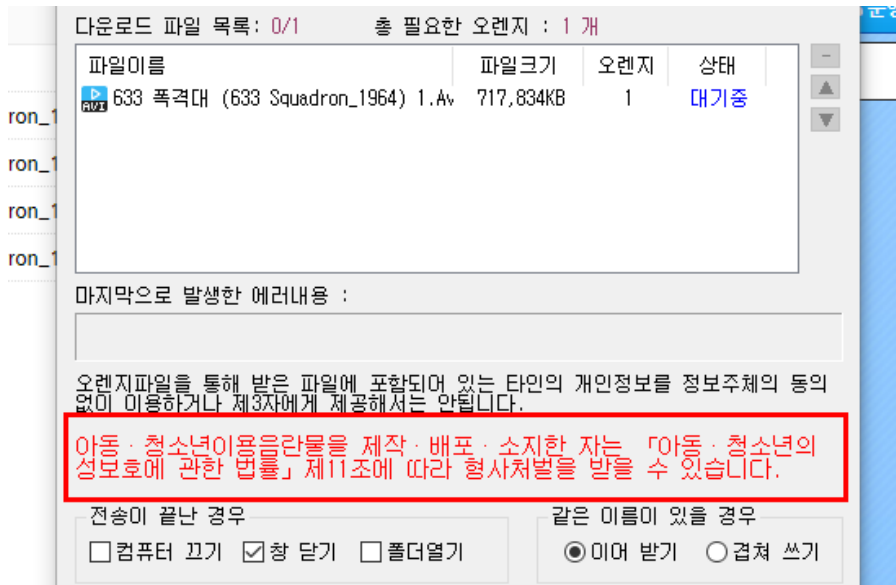
19

이 정보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19 세미만 나가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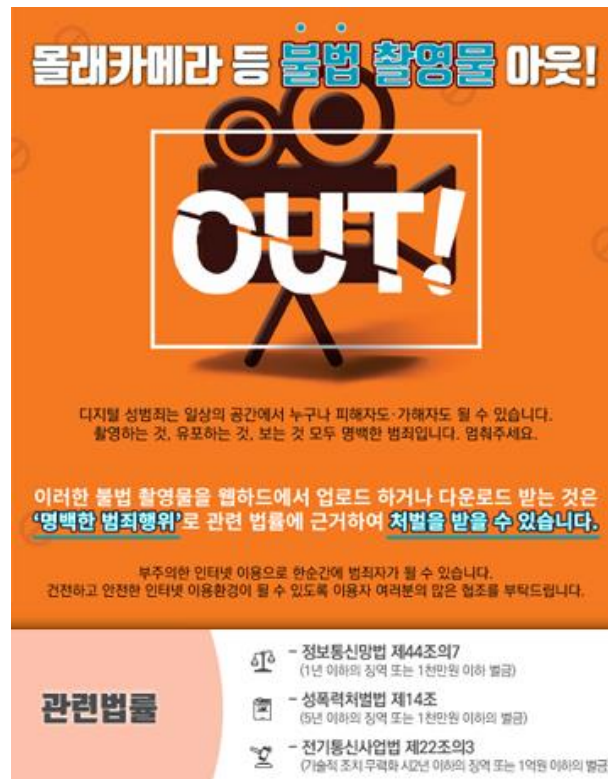
<다운로드 페이지 내에 경고문 삽입>



2.4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(2015년)

2.5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메인 팝업 등 홍보 실시 (2016년 01월)

<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실시>

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'20.12.10. ~ 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
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															
※ 대상기간 : '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															
□ '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·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0	0	
		소계											0	0	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0	0
		해당없음												0	0
	삭제·차단 사유	각하 등												0	0
		소계												0	0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
	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														

4.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대한 절차

4.1 관련 규정

- 2015년 1월에 제정된 사내 "이용자 보호 계획서"의 제4조 "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접수 및 처리계획"에 따름

4.2 처리절차

- 고객만족센터는 유해정보의 모니터링을 24시간 연중무휴 2인이 항시 감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.
- 홈페이지 모니터링시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며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심위에 즉시 신고하여 유해성의 심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- 유해성의 심의를 받은 정보가 유해정보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유해정보를 삭제한다
- 기타 외부로부터의 신고에 관하여서는 제2조 "이용자 보호기구의 운영" 방

침에 따르며 해당 침해영상의 게시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4항 “불법복제물 복제, 전송자 및 상습적인 침해자에 대한 제제규정”에 따라 조치한다

<피해접수 처리 흐름도>

처리절차



4.3 기타 운영사항

-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“이용자 보호 계획서”의 내용을 따른다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김기환	최근수
부 서	대표이사	고객만족센터
직 책	대표이사	팀 장
지정일	2015. 01. 05	2015. 01. 05

6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참여	2020.01.06	불법촬영물 및 저작권 처리방침	김기환 최근수	2시간	자체교육
교육참여	2020.07.06	불법촬영물 및 저작권 처리방침	김기환 최근수	2시간	자체교육